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1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이해식 · 서삼석
주철현 · 안호영 · 문금주
허성무 · 권칠승 · 이춘석
이학영 · 김성범 · 이정문
최혁진 · 이재관 · 김 윤
김의겸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의 경영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 이는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시책임.

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과 산림 분야 일각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심각한 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 투기 세력이나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등을 경매를 통해 헐값에 취득한 후 공익용 산지라는 이유로 정부의 사유림 매수 사업에 신청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꼼수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임.

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한정된 재정을 잠식하고 예산을 낭비하게 만

들 뿐만 아니라, 산림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매수해야 할 성실한 산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함. 또한, 국가 정책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측면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음.

이에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먹튀성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, 국가의 산지 매수 예산이 본연의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6항 신설).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산림청장은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경위,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공유림 등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매수대상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) ①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8조(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산림청장은 투기 행위를 방</u> <u>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경위,</u> <u>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2항</u> <u>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대상</u> <u>을 제한할 수 있다.</u>